# 경제 및 고용 동향

- ◆ 2013년 5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1.1% 증가. 전월대 비 0.7% 감소
- 2013년 5월 생산은 제조업에서 감소하였으나 건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에서 증가하여 전년동 월대비 1.1% 증가함.
  - 제조업 생산은 반도체 및 부품(6.4%), 화학제품 (5.9%), 의료정밀과학(15.5%) 등에서 증가하였으나 기계장비(-6.8%), 석유정제(-11.8%), 영상음향통신 (-16.1%) 등에서 줄어 전년동월대비 1.5% 증가(전 월대비 0.4% 감소)함.
  - ─ 서비스업 생산은 도소매(-0.4%)< 예술・스포츠・</li> 여가(-1.5%) 등에서 감소하였으나 보건 · 사회복지 (5.1%), 금융·보험(2.2%), 전문·과학·기술(5.2%), 부동산・임대(4.7%) 등에서 증가하여 전년동월대 비 1.6% 증가(전월대비 0.2% 증가)함.
- 2013년 5월 소비는 전년동월대비 0.5% 증가, 투자는 전년동월대비 11.6% 감소함.
  - 소비재판매액지수는 서적·문구 등 비내구재(-0.2%) 는 감소하였으나 가전제품 등 내구재(1.5%)와 신발 및 가방 등 준내구재(0.8%)가 늘어 전년동월대비 0.5% 증가(전월대비 0.2% 감소)함.
  - 설비투자는 자동차 등에서 증가하였으나 일반기계 류, 전기 및 전자기기 등에서 투자가 줄어 전년동 월대비 11.6% 감소(전월대비 1.2% 증가)함.
  - 건설기성(불변)은 건축 및 토목공사가 늘어 전년동 월대비 12.5% 증가하였고, 건설기성(경상)은 전년 동월대비 11.8% 증가함. 건설수주(경상)는 기계설 치, 발전 · 통신 등에서 증가하였으나 재개발 · 재건

축주택, 사무실 등에서 줄어 전년동월대비 19.1% 감소함.

- 2013년 5월 동행종합지수와 선행종합지수는 전월대비 각각 0.2%, 0.7% 상승함.
  -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광공업생산지수, 내수출하지 수 등이 감소하여 전월대비 0.2p 하락함.
  - 향후 경기 국면을 예고해 주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수출입물가비율, 소비자기 대지수 등이 증가하여 전월대비 0.3p 상승함.

### ◆ 2013년 6월 소비자물가지수 전년동월대비 1.0% 상승(생활물가지수 0.3% 상승)

- 2013년 6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7.2(2010년=100)로 나타나 전월대비 0.1% 하락하였고, 전년동월대비 1.0% 상승하여 2012년 11월의 1.6% 상승 이후 8개월 연속 1%대 상승을 기록함.
  - 소비자물가지수의 지출목적별 동향을 보면, 전년동월대비 교통(-1.5%), 기타 상품 및 서비스(-0.3%),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0.2%) 부문만 하락하였고, 주택·수도·전기·연료(3.8%), 의류 및 신발(1.9%), 주류 및 판매(1.7%), 음식 및 숙박(1.6%),

#### 〈표 1〉 최근 경제일반 동향

(단위:%,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2010			2011						2	012			2013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p	연간p	5월	1/4	5월p
	광공업 생산	25.8	19.5	10.9	11.7	16.2	10.4	7.2	5.3	5.0	6.9	3.8	1.5	0.4	1.1	1.7	3.1	-1.7	-1.4(-0.4)
	제조업 생산	26.8	20.2	11.2	11.9	16.3	10.6	7.4	5.1	5.3	7.0	4.2	1.5	0.3	1.2	1.8	3.2	-1.7	-1.5(-0.4)
생산	출하	21.8	17.2	9.9	11.9	14.3	11.9	7.2	4.9	3.5	6.7	3.3	1.5	0.4	-0.1	1.3	3.4	-2.1	-1.7(0.1)
87	내수	21.2	15.4	6.6	8.3	11.5	6.8	3.8	2.7	0.2	3.3	0.3	-1.3	-1.5	-1.9	-1.1	0.9	-2.6	-1.7(0.3)
	수출	22.5	19.7	14.5	16.9	18.1	18.1	11.6	7.7	7.2	10.8	6.7	4.9	2.3	1.8	3.9	6.7	-1.5	-1.7(-0.3)
	서비스업생산	5.7	4.0	2.3	3.1	3.9	2.8	3.3	4.5	2.7	3.3	2.5	1.7	1.6	1.3	1.7	2.3	0.7	1.6(0.2)
소비	소비재 판매	9.9	4.9	7.5	5.1	6.7	5.4	5.7	4.7	1.9	4.3	2.0	1.0	1.7	2.5	1.8	2.5	0.2	0.5(-0.2)
투자	설비투자	25.5	24.5	29.3	13.5	24.2	5.4	4.8	-3.1	-4.7	0.7	9.4	-0.4	-7.1	-5.6	-1.1	-3.3	-14.4	-11.6(1.2)
물가		2.7	2.6	2.9	3.6	3.0	4.8	4.2	4.8	4.0	4.0	3.0	2.4	1.6	1.7	2.2	2,2	1.4	1.0(-0.1)

- 주:1) 광공업 생산은 광업(C), 제조업(D), 전기·가스업(E, F)을 포함하나 거의 대부분 제조업을 대변함.
  - 2)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제9차 개정, 2007. 12. 28)상의 13개 대분류(도소매업(G), 운수업(H), 숙박 및 음식점업(I),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J), 금융 및 보험업(K), 부동산 및 임대업(L),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N),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O), 교육서비스업(P),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Q),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S),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를 포괄하며, 이 중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 산업에서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은 제외함.
  - 3) 물가상승률은 2013년 6월 기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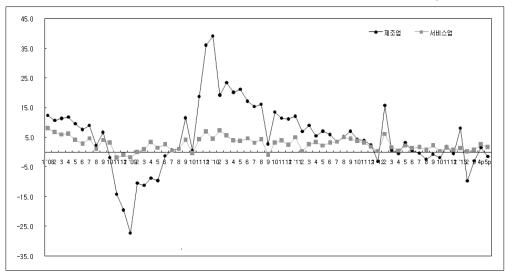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소비자물가동향』, 각호.

### 주요 노동동향

- 교육(1.0%) 부문 등을 중심으로 상승함.
- 2013년 6월 생활물가지수는 106.3을 기록하여 전월대비 0.2%, 하락 전년동월대비 0.3% 상승함.

[그림 1] 제조업 및 서비스업 생산증가율

(단위:%,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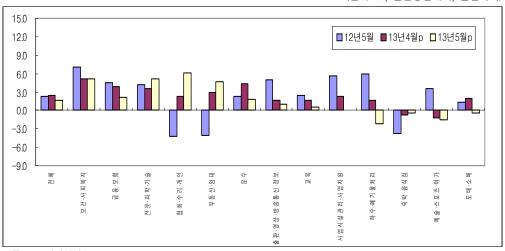


주:p는 잠정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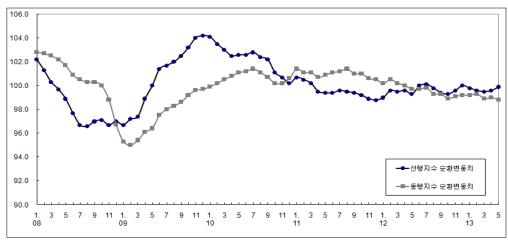
자료: 통계청(2012. 4), 『2013년 5월 산업활동동향』.

### [그림 2] 서비스업 업종별 생산 추이

(단위:%,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주:p는 잠정치임. 자료:통계청, KOSIS.



[그림 3]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추이(2010=100)

자료: 통계청, KOSIS.

(김복순, 동향분석팀 책임연구원)

### ◈ 취업자 증가 지속

- 2013년 2분기 중 경제활동인구는 26,138천 명으로 전년동기대비 294천 명(1.1%) 증가함.
  - 남성 경제활동인구는 15,173천 명으로 159천 명(1.1%) 증가하였고, 여성은 10,965 천 명으로 136천 명(1.3%) 증가함.

〈표 2〉 최근의 고용 동향

(단위:천 명,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

					2012				20	13	
			1/4분기	2/4분기	6월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5월	6월
경 제	활동(	인 구	24,873 ( 1.6)	25,844 ( 1.6)	25,939 ( 1.4)	25,760 ( 1.9)	25,526 ( 1.3)	25,091 ( 0.9)	26,138 ( 1.1)	26,195 ( 1.0)	26,291 ( 1.4)
참	가	율	60.1	62.3	62.4	61.8	61.1	59.9	62.2	62.3	62.5
취	업	자	23,927 ( 2.0)	25,003 (1.8)	25,117 (1.5)	24,989 ( 2.1)	24,804 ( 1.4)	24,184 ( 1.1)	25,326 ( 1.3)	25,398 ( 1.1)	25,478 ( 1.4)
고	용	률	57.8	60.2	60.4	60.0	59.4	57.7	60.2	60.4	60.5
실	업	자	947	841	822	770	722	907	812	797	813
실	업	률	3.8	3.3	3.2	3.0	2.8	3.6	3.1	3.0	3.1
비경제	데활동	인구	16,495 ( 0.6)	15,669 (0.7)	15,622 (1.2)	15,904 ( 0.4)	16,258 ( 1.5)	16,831 ( 2.0)	15,911 ( 1.5)	15,853 ( 1.8)	15,807 (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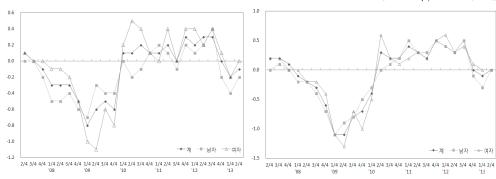
주:()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고용률 = 취업자/생산가능인구\*100.

자료: 통계청(2013.7), 『2013년 6월 고용동향』.

- 2013년 2분기 중 경제활동참가율은 62.2%로 전년동기대비 0.1%p 하락함.
  - 성별로 보면, 남성(73.8%)은 전년동기대비 0.2%p 하락하였으며, 여성(51.0%)은 전년 동기와 동일한 수준임(그림 4 좌측 참조).
- 2013년 2분기 중 고용률은 60.2%로 전년동기와 동일한 수준임.
  - 남성의 고용률은 71.4%, 여성의 고용률은 49.5%로 각각 전년동기와 동일한 수준임(그림 4 우측 참조).
- 2013년 2분기 중 취업자는 25,326천 명으로 전년동기대비 324천 명(1.3%)이 증가함.
  - 성별로 보면, 남성 취업자는 14,679천 명으로 전년동기대비 179천 명(1.2%)이 증가하였고, 여성 취업자는 10,647천 명으로 전년동기대비 145천 명(1.4%)이 증가함 (그림 5 참조).

### [그림 4] 성별 참가율(좌)과 고용률(우) 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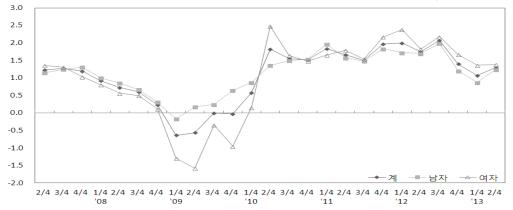
(단위:%p, 전년동기대비)



자료: 통계청, KOSIS.

#### [그림 5] 성별 취업자 증가율

(단위:%, 전년동기대비)



자료: 통계청, KO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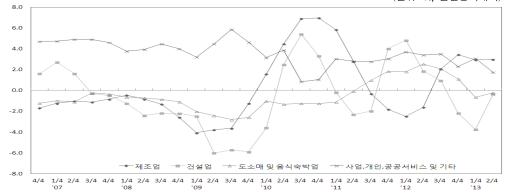
- 2013년 2분기 중 실업자는 812천 명으로 전년동기대비 29천 명(-3.5%) 감소하였고, 실업률은 3.1%로 전년동기대비 0.2%p 하락함.
  - 남성 실업자는 494천 명으로 전년동기대비 20천 명(-3.9%) 감소하였고, 여성 실업자는 318천 명으로 전년동기대비 9천 명(-2.8%) 감소함.
  - 실업률은 남성이 3.3%로 전년동기대비 0.1%p 하락하였고, 여성은 2.9%로 전년동 기대비 0.1%p 하락함.
- 2013년 2분기 중 비경제활동인구는 15,911천 명으로 전년동기대비 242천 명(1.5%) 증가함.
  - 남성 비경제활동인구는 5,386천 명으로 전년동기대비 104천 명(2.0%) 증가하였고, 여성 비경제활동인구는 10,525천 명으로 전년동기대비 139천 명(1.3%) 증가함.
  - 비경제활동인구 중 구직단념자는 167천 명으로 전년동기대비 20천 명 감소함.
  - 활동상태별 비경제활동인구 중 특별한 사유 없이 그냥 쉬었다고 응답한 '쉬었음' 은 1,408천 명으로 전년동기대비 44천 명(3.2%) 증가하였고, 정규교육기관 재학, 입시학원,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수강을 포함하는 '재학·수강'은 4,367천 명으로 147천 명(3.5%) 증가함.

### ◈ 제조업 취업자 증가 지속

○ 2013년 2분기 중 산업별 취업자의 전년동기대비 증감을 보면, 제조업(122천 명, 3.0%), 사업 • 개인 • 공공서비스업(154천 명, 1.7%), 전기 • 운수 • 통신 • 금융업(92천 명, 3.1%) 등에서 증가한 반면, 농림어업(-27천 명, -1.6%), 건설업(-6천 명, -0.4%), 도소매 • 음식숙박업(-12천 명, -0.2%)에서는 감소함.

### [그림 6] 산업별 취업자 증가율





자료: 통계청, KOSIS.

#### 〈표 3〉 산업별 취업자

(단위:천명,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2012			2013				
	1/4분기	2/4분기	6월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5월	6월	
전 산 업	23,927 ( 2.0)	25,003 (1.8)	25,117 (1.5)	24,989 ( 2.1)	24,804 ( 1.4)	24,184 ( 1.1)	25,326 ( 1.3)	25,398 ( 1.1)	25,478 ( 1.4)	
농림어업	1,176	1,713	1,770	1,706	1,518	1,167	1,686	1,714	1,751	
	(-2.6)	(-1.4)	(-1.2)	( 0.1)	(-0.2)	(-0.7)	(-1.6)	(-2.4)	(-1.0)	
제조업	4,037	4,061	4,084	4,126	4,196	4,156	4,182	4,192	4,180	
	(-2.5)	(-1.6)	(-1.2)	( 2.1)	( 3.5)	( 3.0)	( 3.0)	( 2.6)	( 2.3)	
건설업	1,721	1,807	1,815	1,772	1,792	1,656	1,801	1,807	1,818	
	( 4.8)	( 1.9)	( 0.8)	( 1.0)	(-2.2)	(-3.7)	(-0.4)	(-0.7)	( 0.2)	
도소매 및 음식·	5,571	5,596	5,594	5,610	5,603	5,534	5,585	5,598	5,641	
숙박업	( 1.8)	( 2.6)	( 2.2)	( 2.1)	( 1.1)	(-0.7)	(-0.2)	(-0.3)	( 0.8)	
사업·개인·공공	8,398	8,820	8,840	8,772	8,682	8,656	8,974	9,013 ( 1.6)	8,972	
서비스업 및 기타	( 3.7)	( 3.4)	( 3.0)	(3.5)	( 2.3)	( 3.1)	( 1.7)		( 1.5)	
전기·운수·통신	3,011	2,991	2,999	2,990	2,998	2,999	3,082	3,074	3,099 ( 3.4)	
및 금융업	( 4.5)	( 2.0)	( 1.3)	(-0.4)	(-0.4)	(-0.4)	( 3.1)	( 2.9)		

- 주:1)()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 2) 2009년부터 9차 개정 산업분류를 적용.
  - 3)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및 기타는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 부동산 및 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을 포함.

자료:통계청(2013.7), 『2013년 6월 고용동향』.

## ◈ 상용직 임금근로자 증가 지속

- 2013년 2분기에 비임금근로자는 7,006천 명으로 전년동기대비 148천 명(-2.1%) 감소 하였고, 임금근로자는 18,320천 명으로 전년동기대비 472천 명(2.6%) 증가함.
  -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11,697천 명으로 638천 명(5.8%) 증가하였고, 임시근로자는 4,945천 명으로 169천 명(-3.3%) 감소하였으며, 일용근로자는 1,678천 명으로 3천 명(0.2%) 증가함.
  - 상용근로자 중심으로 임금근로자 증가가 추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그림 7 좌 측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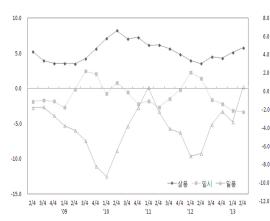
#### 〈표 4〉 종사상 지위별 및 취업시간대별 취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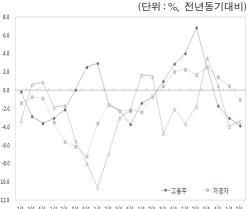
(단위:천명,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

(E11. E 0, E207141-1, E20241-1, 70									
			2012				20	13	
	1/4분기	2/4분기	6월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5월	6월
전 체	23,927 ( 2.0)	25,003 ( 1.8)	25,117 ( 1.5)	24,989 ( 2.1)	24,804 ( 1.4)	24,184 ( 1.1)	25,326 ( 1.3)	26,195 (1.1)	25,478 ( 1.4)
비임금근로자	6,650 ( 1.6)	7,154 ( 2.1)	7,185 ( 2.2)	7,154 ( 2.7)	6,917 ( 0.6)	6,578 (-1.1)	7,006 (-2.1)	7,010 (-2.6)	7,049 (-1.8)
자영업주	5,548 ( 2.8)	5,830 ( 3.1)	5,837 ( 3.0)	5,823 ( 2.5)	5,672 ( 0.6)	5,520 (-0.5)	5,726 (-1.8)	5,729 (-2.0)	5,733 (-1.8)
무급가족종사자	1,102 (-3.6)	1,324 ( -1.8)	1,348 ( -1.2)	1,331 ( 3.6)	1,245 ( 0.5)	1,059 (-3.9)	1,280 (-3.4)	1,281 (-5.2)	1,316 (-2.4)
임금근로자	17,277 ( 2.1)	17,849 ( 1.6)	17,932 ( 1.2)	17,835 ( 1.8)	17,887 ( 1.7)	17,606 ( 1.9)	18,320 ( 2.6)	18,388 ( 2.5)	18,429 ( 2.8)
상용근로자	10,825 ( 4.0)	11,059 ( 3.5)	11,157 ( 4.1)	11,216 ( 4.5)	11,288 ( 4.3)	11,379 ( 5.1)	11,697 ( 5.8)	11,726 ( 6.0)	11,750 ( 5.3)
임시근로자	4,914 ( 2.3)	5,114 ( 1.4)	5,094 (-0.7)	4,992 (-1.6)	4,933 (-2.2)	4,762 (-3.1)	4,945 (-3.3)	4,964 (-3.7)	4,980 (-2.2)
일용근로자	1,538 (-9.6)	1,675 (-9.3)	1,681 (-10.2)	1,627 (-5.2)	1,666 (-3.3)	1,465 (-4.8)	1,678 ( 0.2)	1,699 (-1.1)	1,699 ( 1.0)
36시간 미만	3,313 ( 2.1)	3,284 ( 2.3)	3,196 ( 0.5)	4,722 (-44.2)	3,219 ( 0.0)	5,563 (67.9)	4,821 (46.8)	7,786 (136.6)	3,343 ( 4.6)
36시간 이상	20,081 (1.7)	21,425 ( 1.7)	21,613 ( 1.6)	19,770 (28.2)	21,271 ( 1.6)	18,099 (-9.9)	20,217 (-5.6)	17,338 (-19.6)	21,833 ( 1.0)

주:(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자료:통계청(2013.7), 『2013년 6월 고용동향』.

### [그림 7] 임금근로자(좌) 및 비임금근로자(우) 증가율





2/4 3/4 4/4 1/4 2/4 3/4 3/4 4/4 1/4 2/4 3/4 3/4 4/4 1/4 2/4 3/4 3/4 4/4 1/4 2/4 3/4 3/4 4/4 1/4 2/4 3/4 3/4 4/4 1/4 2/4 3/4 3/4 4/4 1/4 2/4 3/4 3/4 4/4 1/4 2/4 3/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3/4 4/4 1/4 2/4 3/4 3/4 4/4 1/4 2/4 3/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3/4 4/4 1/4 2/4 3/4 4/4 1/4 2/4 3/4 3/4 4/4 1/4 2/4 3/4 4/4 1/4 2/4 3/4 3/4 4/4 1/4 2/4 3/4 3/4 4/4 1/4 2/

주:고용주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이고 자영자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임. 자료:통계청, KOSIS. ○ 2013년 2분기 중 취업시간대별 취업자를 보면,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4,821천 명으로 전년동기대비 1,537천 명(46.8%) 증가하였고,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20,217천 명으로 1,208천 명(-5.6%) 감소함.

### ◈ 전년동기대비 전 학력에서 실업률 하락

- 2013년 2분기 중 연령별 실업률은 40대(2.1%, 0.1%p)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하락하였으며, 또한 모든 교육수준에서 하락함.
  - 실업률 하락폭은 60대(1.6%, -0.4%p)에서 가장 크게 나타남.
  - 교육정도별 실업률은 전년동기대비 중졸 이하(2.0%, -0.2%p), 고졸(3.3%, -0.2%p), 대졸 이상(3.4%, -0.1%p)에서 모두 하락함.

#### 〈표 5〉 연령별·교육수준별 실업자 및 실업률

(단위: 천명,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

			2012			2013				
	1/4분기	2/4분기	6월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5월	6월	
전 체	947 (3.8)	841 (3.3)	822 (3.2)	770 (3.0)	722 (2.8)	907 (3.6)	812 (3.1)	797 (3.0)	813 (3.1)	
15~29세	346	341	323	283	284	343	325	307	327	
	(8.2)	(8.1)	(7.7)	(6.8)	(7.0)	(8.4)	(7.9)	(7.4)	(7.9)	
30~39세	190	188	180	166	162	195	180	181	176	
	(3.2)	(3.2)	(3.0)	(2.8)	(2.7)	(3.3)	(3.0)	(3.0)	(3.0)	
40~49세	164	135	141	133	122	143	146	143	146	
	(2.4)	(2.0)	(2.1)	(2.0)	(1.8)	(2.1)	(2.1)	(2.1)	(2.1)	
50~59세	124	112	113	123	102	127	106	109	99	
	(2.3)	(2.0)	(2.0)	(2.2)	(1.8)	(2.3)	(1.8)	(1.9)	(1.7)	
60세 이상	124	66	65	65	52	99	56	58	66	
	(4.4)	(2.0)	(1.9)	(1.9)	(1.6)	(3.4)	(1.6)	(1.6)	(1.8)	
중졸 이하	187	112	105	106	98	148	101	105	103	
	(4.0)	(2.2)	(2.0)	(2.1)	(2.0)	(3.3)	(2.0)	(2.1)	(2.1)	
고졸	408	356	365	350	321	367	341	330	354	
	(4.1)	(3.5)	(3.6)	(3.4)	(3.2)	(3.7)	(3.3)	(3.2)	(3.5)	
대졸 이상	352	373	352	314	303	392	370	363	356	
	(3.4)	(3.5)	(3.3)	(3.0)	(2.9)	(3.7)	3.4)	(3.3)	(3.2)	
취업무경험 실업자	58	48	43	36	39	61	48	45	49	
취업유경험 실업자	889	793	779	734	683	845	764	753	765	

주:()안의 수치는 실업률.

자료:통계청(2013.7), 『2013년 6월 고용동향』.

○ 2013년 2분기 중 전체 실업자 812천 명을 과거 취업경험 유무로 살펴보면, 취업무경 험 실업자는 48천 명으로 전년동기와 같은 수준이었으며 취업유경험 실업자는 764천 명으로 30천 명 감소함.

(배기준, 동향분석팀 책임연구원)

## 임금 및 근로시간 동향

### ◆ 2013년 4월 명목임금상승률 전년동월대비 5.1% 상승

- 2013년 4월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2,984천 원으로 전년동월대비(2,839천 원) 5.1% 상승함.
  - 2013년 4월 상용근로자 임금총액은 정액급여와 특별급여 증가의 영향으로 전년동 월대비 4.8% 상승한 3.162천 원을 기록함.
  - 상용근로자의 경우 기본급 등을 포함한 정액급여는 전년동월대비 4.9% 상승해 2.557천 원을 기록함.
  - 상용근로자의 특별급여 증가율은 전년동월대비 6.7% 상승하여 425천 원을 기록 한 반면, 초과급여 증가율은 전년동월대비 1.6% 하락하여 180천 원을 기록함.
    - ※ 초과급여: 연장(야근근로 포함) 및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되는 급여 특별급여: 상여금, 성과급, 임금인상소급분, 학자금 등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특별한 급여
  - 임시·일용근로자는 전년동월대비 11.0% 상승한 1,375천 원의 임금총액을 기록함.
- 2013년 1~4월 평균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118천 원으로 전년동평균(2,996천 원)대비 4.1% 상승함.
  - 상용근로자의 임금총액은 2012년 1~4월 평균 대비 4.1% 상승한 3,299천 원을 기록함.
  - 상용근로자 가운데 정액급여는 2012년 1∼4월 평균 대비 4.8%, 초과급여는 0.1%, 특별급여는 2.3% 상승함.
  - ─ 임시・일용근로자는 2012년 1~4월 평균 대비 7.0% 상승한 1,377천 원의 임금총액을 기록함.

#### 〈표 6〉임금관련 주요 지표 동향(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단위:천 원, %, 2010=100.0)

								,
							20	13
		2010	2011	2012	1~4월		1~4월	
					평균	4월	평균	4월
전체 근		2,816	2,844	2,995	2,996	2,839	3,118	2,984
임금총약	7	( 6.8)	( 1.0)	(5.3)	( 6.9)	( 4.4)	( 4.1)	( 5.1)
	임금총액	3,047 ( 6.4)	3,019 (-0.9)	3,178 ( 5.3)	3,170 ( 7.0)	3,018 ( 5.0)	3,299 ( 4.1)	3,162 ( 4.8)
상용	정액급여	2,234 ( 4.5)	2,341 ( 4.8)	2,470 ( 5.5)	2,442 ( 5.8)	2,437 ( 5.6)	2,558 ( 4.8)	2,557 ( 4.9)
근로자	초과급여	196 (12.2)	179 (-8.4)	181 ( 1.0)	177 ( 3.9)	183 ( 2.4)	177 ( 0.1)	180 (-1.6)
	특별급여	617 (12.3)	498 (-19.3)	527 ( 5.8)	551 (13.9)	398 ( 3.1)	563 ( 2.3)	425 ( 6.7)
임시 · 열 임금총약	일용근로자 백	1,056 (-1.6)	1,215 (15.1)	1,293 ( 6.4)	1,287 (11.3)	1,239 ( 5.2)	1,377 ( 7.0)	1,375 (11.0)
소비자물	물가지수	100.0 ( 2.9)	104.0 ( 4.0)	106.3 ( 2.2)	106.0 ( 2.9)	106.0 ( 2.5)	107.4 ( 1.4)	107.3 ( 1.2)
실질임금	금증가율	3.8	-2.9	3.1	3.9	1.9	2.7	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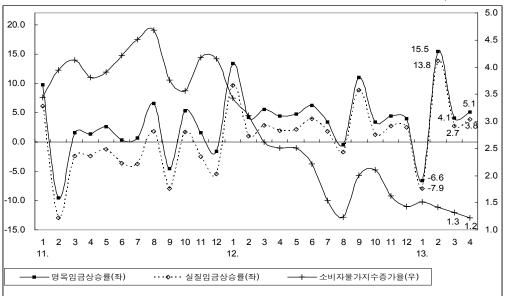
주:1)()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

2) 1~4월 평균값은 누적평균값임.

자료:고용노동부,『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은행, http://ecos.bok.or.kr/

#### [그림 8] 임금상승률 추이

(단위:%, 2010=100.0)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13년 4월 실질임금은 3.8% 상승함.
  - 2013년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2010년 기준)을 감안한 실질임금은 3.8% 상승함(그림 8 참조).
  - 2013년 1~4월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2013년 1~4월 평균 실질임금 증가율은 2.7% 상승함.

### ◆ 2013년 4월 전 산업에서 임금 상승

- 2013년 4월 기준 전 산업에서 임금이 상승함.
  - 2013년 4월 산업별 월평균 임금총액의 상승률을 보면, 건설업(8.7%), 사업서비스업 (7.7%), 교육서비스업(6.8%), 여가관련 서비스업(6.7%) 등 전 산업에서 전년동월대비 임금총액이 증가함.

#### 〈표 7〉 산업별 임금 동향(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단위: 천 원, %)

					20	13
	2011	2012	1~4월 평균	4월	1~4월 평균	4월
전 산 업	2,844( 1.0)	2,995(5.3)	2,996( 6.9)	2,839( 4.4)	3,118( 4.1)	2,984( 5.1)
광업	3,309(10.3)	3,470( 4.9)	3,308(7.0)	3,065 (6.5)	3,477(5.1)	3,093(0.9)
제조업	3,034( 1.6)	3,221 ( 6.1)	3,231 ( 9.6)	3,054(7.1)	3,404(5.4)	3,163(3.6)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5,482( 0.5)	5,388 (-1.7)	4,935( 2.5)	4,417( 4.6)	5,108( 3.5)	4,584( 3.8)
하수・폐기물처리 및 환경복원업	2,488( 1.9)	2,654(6.7)	2,559( 7.1)	2,522( 8.2)	2,677( 4.6)	2,629( 4.2)
건설업	2,181 (12.2)	2,273( 4.2)	2,290( 4.4)	2,177( 2.0)	2,449( 6.9)	2,366(8.7)
도매 및 소매업	2,942( 6.3)	3,122(6.1)	3,078(8.0)	2,894( 5.0)	3,156( 2.5)	3,071 (6.1)
운수업	2,393(0.5)	2,589( 8.2)	2,538( 9.9)	2,606 (10.0)	2,687(5.9)	2,713( 4.1)
숙박 및 음식점업	1,653(13.0)	1,738(5.2)	1,688( 4.9)	1,640( 2.6)	1,744( 3.3)	1,742( 6.2)
출판 • 영상 • 방송통신서비스업	3,692( 9.1)	3,851 ( 4.3)	3,932(6.7)	3,611 ( 3.5)	4,028( 2.4)	3,800 (5.3)
금융 및 보험업	4,771 ( 1.9)	4,988( 4.6)	5,147( 5.1)	4,678( 2.0)	5,240( 1.8)	4,779( 2.2)
부동산업 및 임대업	2,017( 2.6)	2,194( 8.8)	2,201 (10.0)	2,189( 9.3)	2,236( 1.6)	2,300(5.1)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3,870(-2.2)	4,112( 6.3)	4,018( 7.9)	3,879( 3.8)	4,102( 2.1)	4,077(5.1)
사업서비스업	1,700 (-8.0)	1,789(5.3)	1,759( 5.7)	1,725(5.2)	1,850(5.2)	1,857( 7.7)
교육서비스업	2,985(-5.4)	3,123(4.6)	3,195( 3.6)	2,925( 3.1)	3,380(5.8)	3,122(6.8)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2,490(-4.0)	2,608( 4.7)	2,614( 6.6)	2,525( 3.9)	2,654( 1.5)	2,591 ( 2.6)
여가관련 서비스업	2,130( 1.1)	2,211( 3.8)	2,154( 3.3)	2,131 (10.4)	2,326( 8.0)	2,275(6.7)
협회 • 단체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2,185( 3.9)	2,228( 2.0)	2,236( 3.5)	2,171 ( 2.0)	2,246( 0.5)	2,213( 1.9)

주:1) 전체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총액.

2)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

3) 9차 산업분류 기준.

4) 1~4월 평균값은 누적평균값임.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월평균 임금총액이 가장 많은 산업은 금융 및 보험업(4,779천 원)이며, 가장 적은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1,724천 원)으로 나타남.
- 2013년 1~4월 평균 기준 전 산업에서 임금이 증가함.
  - 2013년 1~4월 평균 기준 임금 상승이 가장 높게 나타난 산업은 여가관련 서비스업 (8.0%)임.
  - 그 외 건설업(6.9%), 운수업(5.9%), 교육서비스업(5.8%), 제조업(5.4%), 사업서비스 업(5.2%) 등에서 임금 상승이 두드러짐.

## ◈ 2013년 4월 사업체규모별 전체에서 상용근로자 임금상승률 상승

○ 2013년 4월 사업체규모별 상용근로자 명목임금총액 상승률은 전 사업체에서 모두 상 승함.

### 〈표 8〉 사업체규모별 상용근로자·비상용근로자 임금 동향(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단위: 천 원, %)

						20	13
		2011	2012	1~4월		1~4월	
				평균	4월	평균	4월
	상용임금총액	3,019( -0.9)	3,178(5.3)	3,170 (7.0)	3,018( 5.0)	3,299( 4.1)	3,162( 4.8)
	정액급여	2,341 ( 4.8)	2,470(5.5)	2,442( 5.8)	2,437( 5.6)	2,558( 4.8)	2,557( 4.9)
전 규모 (5인 이상)	초과급여	179( -8.4)	181 ( 1.0)	177( 3.9)	183( 2.4)	177( 0.1)	180(-1.6)
(02 418)	특별급여	498(-19.3)	527( 5.8)	551 (13.9)	398(3.1)	563 ( 2.3)	425( 6.7)
	비상용임금총액	1,215( 15.1)	1,293( 6.4)	1,287(11.3)	1,239(5.2)	1,377( 7.0)	1,375(11.0)
	상용임금총액	2,675( -0.9)	2,834( 5.9)	2,798(6.6)	2,717( 5.6)	2,906( 3.9)	2,838( 4.5)
	정액급여	2,204( 5.9)	2,333( 5.9)	2,304(6.1)	2,310( 5.9)	2,410( 4.6)	2,413( 4.5)
5~299인	초과급여	150(-14.5)	156( 3.5)	150( 5.1)	157( 5.7)	153( 2.0)	160( 1.6)
	특별급여	321 (-27.3)	345(7.7)	344 (10.7)	250( 2.1)	343 (-0.3)	265(6.0)
	비상용임금총액	1,216( 14.8)	1,301 ( 7.0)	1,296(12.1)	1,250( 6.0)	1,392( 7.4)	1,389(11.1)
	상용임금총액	4,273( -0.4)	4,424( 3.5)	4,496( 5.7)	4,121 ( 2.8)	4,699( 4.5)	4,321 ( 4.8)
	정액급여	2,842( 2.3)	2,965(4.3)	2,934( 3.5)	2,903(3.9)	3,086(5.2)	3,071 ( 5.8)
300인 이상	초과급여	286( 6.7)	275 (-3.9)	272 (-0.8)	277 (-5.0)	263 (-3.6)	252(-9.0)
	특별급여	1,146( -8.0)	1,185( 3.4)	1,290(12.8)	941 ( 2.0)	1,351 ( 4.7)	997( 6.0)
	비상용임금총액	1,208( 17.8)	1,209( 0.1)	1,180( 2.3)	1,122(-2.5)	1,212( 2.7)	1,220( 8.8)

주:1)()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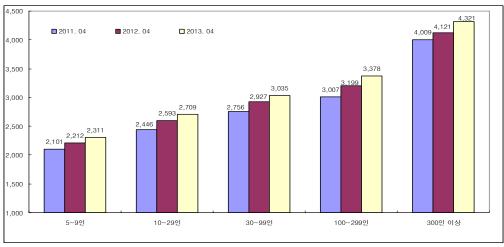
2) 1~4월 평균값은 누적평균값임.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13년 4월 기준 상용근로자 5~299인 규모의 상용임금총액은 정액급여(4.5%), 초 과급여(1.6%), 특별급여(6.0%) 모두가 증가한 영향으로 전년동월대비 4.5%(2,838 천 원) 상승함.
- 한편 300인 이상 규모 사업체의 상용임금총액은 정액급여(5.8%)와 특별급여 (6.0%) 증가의 영향으로 4.8% 증가한 4,321천 원을 기록한 반면, 초과급여(-9.0%) 는 감소함.
- 2013년 1~4월 평균 사업체규모별 상용근로자 명목임금총액 상승률은 전 사업체에서 증가함.
  - 상용근로자 5~299인 규모의 임금총액 상승률(3.9%)은 정액급여(4.6%)와 초과급 여(2.0%)의 영향으로 상승하였지만, 특별급여는 2013년 1~4월 평균 대비 0.3% 하락함.
  - 한편 300인 이상 규모의 임금총액 상승률(4.5%)은 정액급여(5.2%), 특별급여(4.7%)의 영향으로 상승하였지만, 초과급여(-3.6%)는 하락함.

[그림 9] 상용근로자 사업체규모별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

(단위:천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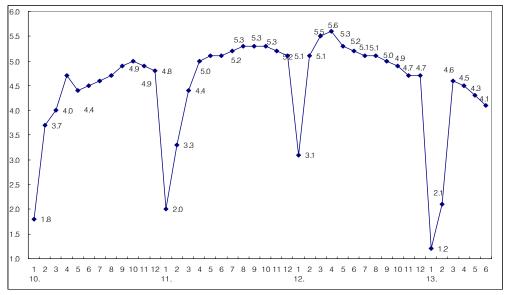
자료:고용노동부,『사업체노동력조사』.

## ◆ 2013년 6월 협약임금 인상률 4.1%

○ 2013년 6월 임금총액 기준 협약임금 인상률은 4.1%로 2012년 6월 인상률(5.2%)에 비해 1.1%p 하락함.

#### [그림 10] 협약임금 인상률 추이

(단위:%)



주:1) 협약임금 인상률이란 100인 이상 사업장의 노사가 협약으로 정한 임금인상률로서 초과급여, 특별상여금 등 변동 성 급여는 제외됨. 따라서 실제로 근로자에게 지급된 명목임금의 상승률과는 다름.

2) 월별 협약임금 인상률은 당월분이 아니라 당월까지 누계분 인상률임.

자료: 고용노동부 e-나라지표, www.index.go.kr

## ◆ 2013년 4월 근로시간 5.5% 증가

- 2013년 4월 근로시간은 전년동월대비 5.5% 증가함.
  - 2013년 4월 전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총근로시간은 181.8시간을 기록하여 전년 동월(172.4시간)에 비해 9.8시간(5.5%) 증가함(표 9 참조).
    - ※ 월력상 근로일수가 2012년 4월 대비 2일 많은 영향으로 근로시간이 크게 증가
  - 상용근로자의 총근로시간은 188.2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5.4% 증가하였고, 비상 용근로자의 총근로시간은 122.9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5.3% 증가함.
- 2013년 1~4월 평균 근로시간은 전년동평균대비 0.3% 감소함.
  - 2013년 1~4월 평균 전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총근로시간은 173.5시간을 기록하여 전년동평균(174.1시간)에 비해 0.6시간(-0.3%) 감소함.
  - 2013년 1~4월 평균 상용근로자의 총근로시간은 178.4시간으로 전년동평균대비 0.6% 감소한 반면, 비상용근로자의 총근로시간은 126.0시간으로 전년동평균대비 3.4% 증가함.

#### 〈표 9〉 내역별 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

(단위: 천 원, %)

					20	13
	2011	2012	1~4월 평균		1~4월 평균	
			1794월 정신	4월	1794월 정신	4월
전체 근로시간	176.3 ( -0.2)	174.3 (-1.1)	174.1 (-0.2)	172.4 (-4.8)	173.5 (-0.3)	181.8 ( 5.5)
상용총근로시간	182.1 ( -1.4)	179.9 (-1.2)	179.4 (-0.2)	178.6 (-4.5)	178.4 (-0.6)	188.2 ( 5.4)
상용소정실근로시간	168.5 ( 0.1)	167.2 (-0.8)	166.5 (-0.2)	165.5 (-4.8)	166.4 (-0.1)	175.9 ( 6.3)
상용초과근로시간	13.6 (-17.1)	12.8 (-5.9)	12.8 (-0.8)	13.1 (-2.2)	12.0 (-6.3)	12.3 (-6.1)
비상용근로시간	122.5 ( 6.2)	122.3 (-0.2)	121.9( 2.1)	116.7 (-2.9)	126.0 ( 3.4)	122.9 ( 5.3)

주:1) 전체 임금근로자 근로시간.

2)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

3) 1~4월 평균값은 누적평균값임.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 2013년 4월 대부분 산업에서 근로시간 증가

- 2013년 4월 숙박 및 음식점업을 제외한 전 산업에서 근로시간이 증가함.
  - 2013년 4월 전년동월대비 산업별 근로시간을 보면, 금융 및 보험업(173.2시간, 9.6%),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176.3시간, 9.0%), 교육서비스업(156.4시간, 7.6%) 등 대부분 산업에서 근로시간이 증가함.
  - 한편 월력상 2013년 4월에 전년동월대비 근로일이 2일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숙박 및 음식점업(182.5시간, -3.6%)은 근로시간이 감소함.
  - 2013년 4월 산업별 월평균 근로시간은 부동산 및 임대업(200.1시간)이 가장 길었으며, 교육서비스업(156.4시간)이 가장 짧은 업종으로 나타남.
- 2013년 1~4월 평균 근로시간은 대부분 산업에서는 감소함.
  - 2013년 1~4월 평균 근로시간이 감소한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175.2시간, -6.2%), 광업(181.1시간, -2.2%), 운수업(177.5, -1.9%), 하수ㆍ폐기물처리 및 환경복 원업(182.2시간, -1.1%) 등에서 근로시간이 감소함.
  - 반면 건설업(156.5시간, 3.2%), 금융 및 보험업(164.3시간, 1.3%), 도매 및 소매업 (174.5시간, 0.6%), 여가관련서비스업(15638시간, 0.6%) 등에서 근로시간이 증가함.

#### 〈표 10〉 산업별 월평균 근로시간 추이(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단위:시간,%)

				20	13
2011	2012	1~4월		1~4월	
		평균	4월	평균	4월
176.3(-0.2)	174.3(-1.1)	174.1 (-0.2)	172.4(-4.8)	173.5(-0.3)	181.8( 5.5)
186.9(-0.6)	185.3(-0.9)	185.2( 1.3)	184.3 (-3.6)	181.1(-2.2)	187.5( 1.7)
190.6(-0.8)	186.4(-2.2)	186.7(-0.9)	187.2(-4.6)	185.2(-0.8)	194.8( 4.1)
177.1 ( 0.1)	175.5(-0.9)	175.1 (-0.5)	174.5(-7.3)	174.3(-0.5)	181.6( 4.1)
186.2(-3.5)	184.8(-0.8)	184.3( 0.7)	183.8(-3.7)	182.2(-1.1)	192.4( 4.7)
153.9( 5.3)	152.5(-0.9)	151.7(-1.9)	147.3(-7.8)	156.5( 3.2)	158.3( 7.5)
175.1 (-1.2)	174.5(-0.3)	173.4( 0.3)	172.3(-4.1)	174.5( 0.6)	183.2( 6.3)
181.6(-1.6)	181.7( 0.1)	180.9( 2.0)	178.9(-2.3)	177.5(-1.9)	185.1 ( 3.5)
186.2(13.7)	186.6( 0.2)	186.7( 1.9)	189.3(-1.6)	175.2(-6.2)	182.5 (-3.6)
164.5(-1.0)	163.9(-0.4)	162.4( 0.1)	161.7(-4.1)	163.8( 0.9)	174.4( 7.9)
163.6(-1.0)	163.4(-0.1)	162.2( 1.0)	158.0(-4.9)	164.3( 1.3)	173.2( 9.6)
194.2(-3.1)	193.4(-0.4)	194.2( 0.7)	190.7(-2.1)	192.5(-0.9)	200.1 ( 4.9)
166.2(-0.1)	165.3(-0.5)	164.3( 0.4)	161.7(-5.0)	164.8( 0.3)	176.3( 9.0)
172.1 (-4.4)	173.1 ( 0.6)	172.5( 2.6)	170.5(-1.9)	172.3(-0.1)	181.1 ( 6.2)
152.9( 2.0)	151.1(-1.2)	150.2(-0.3)	145.3(-6.6)	151.0( 0.5)	156.4( 7.6)
173.5(-1.7)	174.8( 0.7)	173.6( 1.0)	172.6(-3.5)	173.0(-0.3)	182.0(5.4)
157.1 (-1.0)	158.1 ( 0.6)	155.9( 0.6)	157.7(-2.2)	156.8( 0.6)	165.3( 4.8)
173.6(-0.2)	168.9(-2.7)	168.6 (-2.7)	169.3(-5.5)	168.5(-0.1)	176.4( 4.2)
	176.3(-0.2) 186.9(-0.6) 190.6(-0.8) 177.1( 0.1) 186.2(-3.5) 153.9( 5.3) 175.1(-1.2) 181.6(-1.6) 186.2(13.7) 164.5(-1.0) 194.2(-3.1) 166.2(-0.1) 172.1(-4.4) 152.9( 2.0) 173.5(-1.7) 157.1(-1.0)	176.3(-0.2) 174.3(-1.1) 186.9(-0.6) 185.3(-0.9) 190.6(-0.8) 186.4(-2.2) 177.1( 0.1) 175.5(-0.9) 186.2(-3.5) 184.8(-0.8) 153.9( 5.3) 152.5(-0.9) 175.1(-1.2) 174.5(-0.3) 181.6(-1.6) 181.7( 0.1) 186.2(13.7) 186.6( 0.2) 164.5(-1.0) 163.9(-0.4) 163.6(-1.0) 163.4(-0.1) 194.2(-3.1) 193.4(-0.4) 166.2(-0.1) 165.3(-0.5) 172.1(-4.4) 173.1( 0.6) 152.9( 2.0) 151.1(-1.2) 173.5(-1.7) 174.8( 0.7) 157.1(-1.0) 158.1( 0.6)	176.3(-0.2)   174.3(-1.1)   174.1(-0.2)     186.9(-0.6)   185.3(-0.9)   185.2( 1.3)     190.6(-0.8)   186.4(-2.2)   186.7(-0.9)     177.1( 0.1)   175.5(-0.9)   175.1(-0.5)     186.2(-3.5)   184.8(-0.8)   184.3( 0.7)     153.9( 5.3)   152.5(-0.9)   151.7(-1.9)     175.1(-1.2)   174.5(-0.3)   173.4( 0.3)     181.6(-1.6)   181.7( 0.1)   180.9( 2.0)     186.2(13.7)   186.6( 0.2)   186.7( 1.9)     164.5(-1.0)   163.9(-0.4)   162.4( 0.1)     163.6(-1.0)   163.4(-0.1)   162.2( 1.0)     194.2(-3.1)   193.4(-0.4)   194.2( 0.7)     166.2(-0.1)   165.3(-0.5)   164.3( 0.4)     172.1(-4.4)   173.1( 0.6)   172.5( 2.6)     152.9( 2.0)   151.1(-1.2)   150.2(-0.3)     173.5(-1.7)   174.8( 0.7)   173.6( 1.0)     157.1(-1.0)   158.1( 0.6)   155.9( 0.6)	명균 4월 176.3(-0.2) 174.3(-1.1) 174.1(-0.2) 172.4(-4.8) 186.9(-0.6) 185.3(-0.9) 185.2( 1.3) 184.3(-3.6) 190.6(-0.8) 186.4(-2.2) 186.7(-0.9) 187.2(-4.6) 177.1( 0.1) 175.5(-0.9) 175.1(-0.5) 174.5(-7.3) 186.2(-3.5) 184.8(-0.8) 184.3( 0.7) 183.8(-3.7) 153.9( 5.3) 152.5(-0.9) 151.7(-1.9) 147.3(-7.8) 175.1(-1.2) 174.5(-0.3) 173.4( 0.3) 172.3(-4.1) 181.6(-1.6) 181.7( 0.1) 180.9( 2.0) 178.9(-2.3) 186.2(13.7) 186.6( 0.2) 186.7( 1.9) 189.3(-1.6) 164.5(-1.0) 163.9(-0.4) 162.4( 0.1) 161.7(-4.1) 163.6(-1.0) 163.4(-0.1) 162.2( 1.0) 158.0(-4.9) 194.2(-3.1) 193.4(-0.4) 194.2( 0.7) 190.7(-2.1) 166.2(-0.1) 165.3(-0.5) 164.3( 0.4) 161.7(-5.0) 172.1(-4.4) 173.1( 0.6) 172.5( 2.6) 170.5(-1.9) 152.9( 2.0) 151.1(-1.2) 150.2(-0.3) 145.3(-6.6) 173.5(-1.7) 174.8( 0.7) 173.6( 1.0) 172.6(-3.5) 157.1(-1.0) 158.1( 0.6) 155.9( 0.6) 157.7(-2.2)	2011         2012         1~4월 평균         4월 평균         1~4월 평균           176.3(-0.2)         174.3(-1.1)         174.1(-0.2)         172.4(-4.8)         173.5(-0.3)           186.9(-0.6)         185.3(-0.9)         185.2( 1.3)         184.3(-3.6)         181.1(-2.2)           190.6(-0.8)         186.4(-2.2)         186.7(-0.9)         187.2(-4.6)         185.2(-0.8)           177.1( 0.1)         175.5(-0.9)         175.1(-0.5)         174.5(-7.3)         174.3(-0.5)           186.2(-3.5)         184.8(-0.8)         184.3( 0.7)         183.8(-3.7)         182.2(-1.1)           153.9( 5.3)         152.5(-0.9)         151.7(-1.9)         147.3(-7.8)         156.5( 3.2)           175.1(-1.2)         174.5(-0.3)         173.4( 0.3)         172.3(-4.1)         174.5( 0.6)           181.6(-1.6)         181.7( 0.1)         180.9( 2.0)         178.9(-2.3)         177.5(-1.9)           186.2(13.7)         186.6( 0.2)         186.7( 1.9)         189.3(-1.6)         175.2(-6.2)           164.5(-1.0)         163.9(-0.4)         162.4( 0.1)         161.7(-4.1)         163.8( 0.9)           163.6(-1.0)         163.4(-0.1)         162.2( 1.0)         158.0(-4.9)         164.3( 1.3)           194.2(-3.1)         193.4(-0.4)         194.2( 0.7)

주:1) 전체 임금근로자 기준.

## ◈ 2013년 4월 모든 규모에서 근로시간 증가

- 2013년 4월 사업체규모별 전체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모든 규모에서 증가함.
  - 상용근로자 5~9인 사업체의 총근로시간은 177.9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3.8%, 10~29인 사업체의 총근로시간은 180.4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6.9%, 30~99인 사업체의 총근로시간은 186.4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5.0%, 100~299인 사업체의 총근로시간은 186.4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4.9%, 300인 이상 사업체의 총근로시간은 179.0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5.9% 증가함(그림 11 참조).
- 한편 2013년 1~4월 평균 전체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0~29인을 제외한 모든 규모에 서 감소함.

<sup>2) ( )</sup>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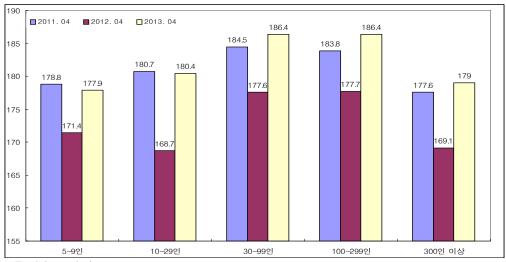
<sup>3) 9</sup>차 산업분류 기준.

<sup>4) 1~4</sup>월 평균값은 누적평균값임. 자료: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상용근로자 5~9인 사업체의 2013년 1~4월 평균 총근로시간은 170.7시간으로 전년동평균대비 1.1%, 30~99인 사업체의 총근로시간은 177.2시간으로 전년동평균대비 0.6%, 100~299인 사업체의 총근로시간은 178.3시간으로 전년동평균대비 0.7%, 300인 이상 사업체의 총근로시간은 170.4시간으로 전년동평균대비 0.5% 감소한 반면, 10~29사업체의 총근로시간은 172.5시간으로 전년동평균대비 0.8% 증가함.

[그림 11] 규모별 월평균 근로시간 추이

(단위: 시간)



주:전체 근로자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정성미, 동향분석팀 책임연구원)

## 노사관계 및 노동정책 동향

### ◆ 노동쟁의 조정사건과 조정성립률

- 지난 6월 노동쟁의와 관련된 조정사건 접수 건수는 281건(이월사건 포함 건수)
  - 조정은 노사간 임금·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교섭 결렬로 노동쟁의 상태인 노조 또는 사용자가 신청하는 경우, 노동쟁의 당사자의 주장을 청취하고 사실을 조사

- 하여 조정안을 작성한 후 당사자에게 수락하도록 권고하는 제도임.
- 노동쟁의 조정사건 통계는 집단적 노사관계 지형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임.
- 지난 6월 노동쟁의 조정사건 접수 건수는 작년 동월 건수(328건)보다 47건 낮은 수치임.
- 지난 6월 조정성립률 70.1%
  - 조정성립은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노동위원회의 중재로 합의하여 취하한 경우를 가리킴.
  - 지난 6월 조정성립률은 70.1%로 작년 동월 성립률(64.9%)보다 5.2% 높아진 수치임.※ 조정성립률=(조정성립)(조정성립+조정불성립)×100

#### (표 11) 2012, 2013년 6월 조정사건 접수 및 처리내역별 현황

	접수	수 처리	조정성립				조정불성립	빌	행정	취하		조정
	건수	건수	소계 A	조정안 수락	합의 취하	소계 B	조정안 거부	조정 중지	지도	철회	진행중	성립률
2013. 6	281	235	143	92	51	61	27	34	7	24	46	70.1
2012. 6	328	276	148	73	75	80	27	53	20	28	52	64.9

자료: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 ◆ 복수노조사건

- 지난 6월 복수노조사건 접수건수는 273건(이월사건 포함 건수)
  - 복수노조와 관련된 사건에는 교섭요구 사실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 교섭요구노동
     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결정신청, 그리고 교섭단위 분리 결정신청 등이 포함됨.
  - 지난 6월 복수노조사건 접수 건수는 작년 동월(324건)보다 51건 낮은 수치임.

#### (표 12) 2012. 2013년 6월 복수노조사건 접수 및 처리내역별 현황

	접수건수				처리내역				진행 중
	省十七十	계	전부인정	일부인정	기각	각하	취하	화해	선행 중
2013. 6	273	245	88	4	27	29	97	0	29
2012. 6	324	285	175	3	30	22	55	0	39

자료: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 진행 중인 사건을 제외하고 전부 및 일부 인정 비율이 약 38%(92건), 기각·각하· 취하 비율이 약 62%(153건)를 차지함.
-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 배분과 관련된 복수노조 간 갈등 증가
  - 노동계는 최근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 사건'의 대부분이 유급 노조전임자에 대한 차별행위 문제로 발생했음을 지적함.
  - 이러한 문제는 타임오프 총량 산정이 각 노동조합별 조합원 수가 아닌 전체 사업 장의 조합원 수에 기반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임.
  - 고용노동부의 타임오프 매뉴얼에 따르면, 하나의 사업장에 2개 이상의 노조가 조직돼 있는 경우 각 노조의 조합원 수를 합해 전체 조합원 규모에 따라 노사가 근로시간면제 한도 범위 내에서 타임오프의 총량을 정해야 함.
  - 교섭대표노조에 더 많은 타임오프 한도를 인정해줄 수 있다는 고용노동부의 입장
     에 따라 소수노조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됨.
  - 단협 체결주체가 각 노조이고 각 개별노조가 독자적으로 노조활동을 한다는 점에서 개별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타임오프 한도를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도 존재함.
  -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복수노조 타임오프 한도 배분은 기본적으로 노사 또는 노조간 결정할 사안임을 밝힘.

## ◈ 심판사건

- 지난 5월 심판사건 접수 건수는 6,780건(이월사건 포함 건수)
  - 심판사건은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또는 부당노동행위
     에 대한 구제신청 사건임.
  - 지난 5월 심판사건 접수 건수는 작년 동월(6,121건)보다 659건 증가한 수치임.
  - 처리내역별로는 전부 및 일부 인정 비율이 약 11%(573건), 화해 비율이 약 35%(1869건)를 차지함.

#### 〈표 13〉 2012, 2013년 5월 심판사건 접수 및 처리내역별 현황

	접수 건수	처리내역							
		계	전부인정	일부인정	기각	각하	취하	화해	진행 중
2013. 5	6,780	5,331	457	116	830	289	1,770	1,869	1,449
2012. 5	6,121	4,503	375	83	836	237	1,397	1,575	1,618

주:2013년 6월 통계는 현재 취합 중.

자료: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 ◈ 차별시정사건

- 지난 6월 차별시정사건 접수 건수는 73건(이월사건 포함 건수)
  - 차별시정사건은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임금 및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한 사건을 가리킴.
  - 지난 6월 차별시정사건 접수 건수는 작년 동월(45건)보다 28건 증가한 수치임.
  - 처리내역별로는 전부 및 일부 시정 비율이 약 30%(16건), 조정성립 비율이 약 28%(15건)를 차지함.
    - ※ 차별시정위원회의 판정을 통한 해결보다 당사자 간 자율적 대화를 통한 해결을 원하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조정이나 중재를 요청할 수 있음. 조정이 성립되거나 중재 결정이 내려지면 이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지님.

#### (표 14) 2012, 2013년 6월 차별시정사건 접수 및 처리내역별 현황

	접수 건수	처리내역								
		계	전부 시정	일부 시정	기각	각하	조정 성립	중재 결정	취하	진행 중
2013. 6	73	54	6	10	6	3	15	0	14	19
2012. 6	45	28	0	3	7	5	3	0	10	17

자료: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 ◈ 정부 '고용률 70% 로드맵' 발표

- 정부는 6. 4.(화) '고용률 70% 로드맵'을 발표함
  - 앞서 5. 30(목)에는 한국노총총연맹 위원장,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노사정 일자리협약'을 체결한 바 있음.
  - 고용률 70% 로드맵에 따르면, 2017년까지 총 238만 개 일자리(연 47.6만 개) 창출을 위해 「서비스산업발전법」등 34개 법률 제·개정과, 13개 부처의 137개 실천과제 추진 및 200시간의 실근로시간 단축이 추진됨.
  - 로드맵 주요 전략으로는 창조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 일하는 방식과 근로시간 개혁, 여성·청년 등 비경활인구의 고용가능성 제고, 일자리를 위한 사회적 책임과 연대 강화 등이 포함됨.
  - 확정된 로드맵은 이후 연차별 계획 방식으로 운영되며, 모든 부처별 추진상황은 '고용률 70% 온라인 현황판(www.고용률70.go.kr)'을 통해 상시적으로 공개됨.

### ○ 시간제 일자리 창출 논의 본격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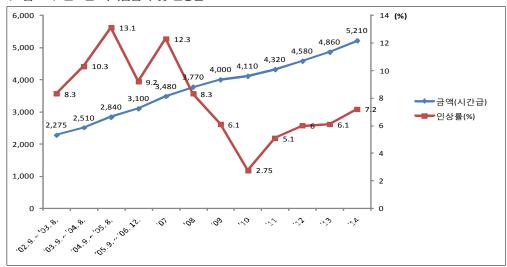
-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은 고용률 70% 로드맵의 핵심 요소 중 하나임.
- 정부는 우선 공공부문에서 시간제 일반직 공무원 채용 및 확대, 시간제 채용 목표 제 등을 실시하고, 생애주기별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도입 등 법·제도 개선을 통해 시간제 일자리를 민간부문에 점진적으로 확산시킨다는 계획임.
- 관계자에 따르면, 공공부문 시간제 적합 직종으로는 법률직, 회계직, 통역직, 번역
   직 등이 고려되고 있음.
- 노동계는 시간제 일자리 확산에 따라 저임금-불안정 노동이 대폭 늘게 될 것이며, 여성 및 청년 노동자들은 단시간-저임금 구조에 갇히게 되어 결국 기본적 생활조 차 보장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함.
- 한 공익 전문가는 시간제 공무원 채용이 해당 인원의 고용을 보장할 수는 있지만, 저임금 직군이 고착화되거나, 향후 해당 근로자들의 전일제 전환요구가 속출할 수 있음을 지적함. 그에 따르면, 특정 직무 분리 방식이 아닌 모든 직군에서 파트 타임에서 풀타임, 또는 풀타임에서 파트타임으로의 이동이 가능해야 진정한 의미 의 시간제 일자리 실현이 가능함.
- 고용노동부는 시간제 근로 차별시정 및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금년 하반기 불합리한 차별에 대한 집중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힘.

### ○ 청년위원회 출범

- 청년 일자리 창출사업을 위한 청년위원회가 공식 가동됨.
- 청년위원회는 대통령 직속기구로 국민대통합위원회, 지역발전위원회와 함께 3대 국정과제위원회임.
- 위원장에는 남민우 다산네트웍스 대표가 임명됨. 위원장은 청년위의 최우선 목표 가 청년 일자리 창출임을 강조함.
- 청년위원회는 청년 일자리 적극 발굴, 청년 발전 정책의 조율 및 추진, 실질적 제도개선 방안 마련, 청년 목소리를 경청하는 온·오프라인 소통체계 구축과 인재양성 등 주요 전략을 추진한다고 밝힘.

## ◈ 2014년도 최저임금 시급 5,210원

- 최저임금위원회는 2014년도 적용 최저임금안 시간급 5.210원을 의결함.
  - 이는 올해 최저임금 시간급 4,860원에 비해 350원(7.2%) 증가한 액수임.
  - 심의과정에서 근로자위원은 최초에 시급 5,910원(전년대비 21.6%인상)을, 사용자 위원은 시급 4,860원(전년대비 동결)을 요구한 바 있음.



#### [그림 12] 연도별 최저임금액 및 인상률

자료: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액 현황,

- 7.4(목) 오후 7시 5분부터 7.5(금) 오전 4시 9분까지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의 요청으로 제시된 공익안 5,210원을 표결에 부쳐 2014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의결함.
  -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 수준이 유사근로자의 임금인상률,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근로자의 소득분배 상황 개선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힘.
  - 2014년도 적용 최저임금안은 10일 이상의 이의제기 기간을 거친 후, 8월 5일 최종 결정됨.
- 중소기업중앙회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인식 조사 발표
  -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164곳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반응을 조사해 7월 17일 발표함.
  -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기업의 67.7%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해 '높음' 또는 '매우 높음'이라고 답함.
  - 응답기업의 약 70%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반응함. 또한 중소기업의 57.3%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감소 등으로 이어져 오히 려 "소득분배 및 생활안정도가 더욱 악화될 것"이라 응답함.
  - 보고서는 최저임금 관련 중소기업의 기타 의견으로 갑을구조의 불공정성 개선,
     소득비례 차등징수, 외국인근로자 최저임금 별도적용 필요성 등을 제시함.
  -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현재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98% 이상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은 최저임금 인상결정으로 인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임금지급 주체로

- 서, 2009년 이후 최고의 인상률로 상승한 최저임금 지급 부담만 안게 되었다"며, "기업의 지불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결정된 이번 최저임금은 결국 일자리 축소로 이어져 고용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함.
- 민주노총은 논평을 통해 중소기업중앙회가 저임금노동자들의 생존권은 외면하면서 노동착취에만 혈안이 된 사용자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객관성으로 가장하여 악용하고 있으며, 최저임금 인상을 빌미로 저임금 노동자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함.

### ◈ 임금체계 개편 논의 본격화

- 통상임금 산입범위를 둘러싼 혼란 가중
  -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전국 100인 이상 사업장 9천580곳 중 135 곳(1.41%)에서 통상임금 관련 소송이 진행 중임. 기업규모별로는 대규모 사업장, 업종별로는 우수업과 제조업의 비중이 높음.
  - 고용노동부는 6월 21일, '임금제도개선위원회'를 발족함. 위원회의 주요 의제에는 임금체계 간소화, 통상임금을 대체할 새로운 기준 임금의 정립, 정년연장에 대비한 직무급제, 임금피크제 등이 포함됨.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임금제도개선위원회 논의를 기반으로 노사정 당사 자들이 결론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밝힘.
  - 통상임금은 판례를 따르고, 임금결정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해야 한다는 노동계의 주장, 그리고 통상임금 판례를 변경하고 임금체계는 성과연동형으로 바꿔야 한다 는 경영계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며 치열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음.

## ◈ 철도 민영화 논란

- 국토교통부는 6월 26일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확정·발표함.
  - 「철도산업 발전방안」에는 1) 철도공사를 "지주회사+자회사" 체제로 전환 2) 2015 년 개통되는 수서발 KTX 노선을 철도공사 출자회사에서 운영 3) 2017년까지 개 통예정인 신규 노선과 철도공사가 운영을 포기하는 적자선에는 새로운 사업자의 시장참여를 허용 등의 내용이 포함됨.
  - 국토부는 「철도산업 발전방안」이 확정됨에 따라 내달부터 철도공사와 합동으로 추진단을 구성하여 계획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힘.
- 철도민영화 반대여론 확산

- 노동계는 국토부가 국회와 국민을 무시한 채 막무가내로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철도민영화가 국민의 교통기본권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고, 환경 친화성과 지속가능성으로 그 가치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철도산업을 붕괴시키게될 것이라고 주장함.
- 일각에서는 수서발 KTX 운영사에 민간지분 규모가 커지면 향후 외국 투기자본의 진입을 배제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됨.
- 전국철도노동조합은 6월 25~27일 철도민영화저지를 위한 총투표를 실시함. 조합 원 2만 724명 중 1만 9천16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89.7%가 파업에 찬성함.
- 언론에 따르면, 철도노조와 KTX 민영화 저지·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 대책위원회 등 노동·시민·사회단체 소속 1만여 명은 7월 13일 '철도 민영화 반대 범국민대회'를 개최하고 정부에 철도 민영화 강행 중단을 촉구함.
- 철도노조는 7월 대국민 여론전에 주력하고, 8월 말에서 9월 초 사이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힘.
- 정부, 수서발 KTX회사 민간매각 방지대책 발표
  - 국토교통부는 7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수서발 KTX회사 민간매각 방지대책 발표함.
  - 정부의 민영화 방지안에는 1) 민간매각 제한에 동의하는 공공부문 자금만을 유치 2) 정관에 민간매각 제한을 명시하여 공공부문의 지분을 매각할 경우 철도공사 동의 없이는 승인이 불가능하도록 함 3) 매각제한과 관련된 정관내용을 변경할 경우 주주총회에서 특별의결하도록 함 4)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지분을 매각할 경우 주주협약에 따라 매각자에게 위약벌이 부과됨은 물론, 정관의 규정에 따라 매매 자체가 무효가 되도록 하여 새로 주식을 매입한 사람은 원천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함 5) 정부에서 철도사업 면허 부여 시 지분매각은 이사회 승인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면허 정지 또는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함 등의 내용이 포함됨.

## ◈ 금속노조 파업

- 금속노조 소속 현대기아차지부 정규직-비정규직 조합원들이 10일 공동파업을 전개
  - 노조에 따르면 7월 10일, 6만여 명의 금속노조 조합원들은 각 사업장에서 전면파업・확대간부 파업에 돌입함. 한국지엠 부평공장과 울산 태화강변 등 9개 지역에서 총파업 결의대회가 열림. 기아차지부 화성지회 사내하청분회는 4시간 부분파업을 벌임.

- 언론 보도에 따르면, 10일 현대차 울산공장에서는 노사간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여 30여명의 조합원들이 부상을 입음.
- 노조의 요구사항에는 △금속산업 최저임금 인상 △임금체계 개선 △정년연장 △ 원·하청 불공정 거래 근절 △사내 생산공정과 상시업무 정규직화 △사업장단협 효력 확장 등이 포함됨.
- 7월 15일에는 금속노조현대차 아산 사내하청지회 박정식 사무장이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됨. 고인은 유서에서 "같은 꿈과 희망을 좇았던 분들에게 전 그 꿈과 희망마저 버리고 가는 비겁한 겁쟁이로 불려도 좋습니다. 하지만 저로 인해 그 꿈과 희망을 찾는 끈을 놓지 마시고 꼭 이루시길…" 이라는 마지막 인사를 전함.
-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아산공장위원회,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등은 '현대 차 자본에 의한 타살!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지회 박정식 열사 투쟁대책위원 회'를 구성하고,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화를 위해 투쟁해 나갈 것임을 밝힘.

### ◈ 한국일보 파행 지속

### ○ 노조고발과 직장폐쇄

- 4월 29일 전국언론노조 한국일보지부 비상대책위원회는 200억 원대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장재구 회장을 고발함.
- 한국일보 노조에 따르면, 장 회장은 2002년 경영권 인수 당시 채권단 및 노조에 약속했던 200억 원 추가증자 약속을 뒤늦게 이행하며 사옥 매각 대가로 확보했던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 회사에 200억 원 이상의 손실을 입힌 혐의가 있음.
- 5월 1일 사측은 이영성 편집국장 등 경영진에 비판적인 간부들의 교체인사를 단행함. 기자들은 인사에 불복하며 기존 편집국 체제로 신문 제작에 돌입하였음. 그후 사측의 해임 절차 진행에 맞선 기자들의 인사 철회 요구가 지속됨.
- 6월 15일 사측은 편집국 및 기사작성 프로그램 계정 차단 등 전면적 직장 폐쇄를 단행함.
- 6월 16일 사측은 인사 발령을 거부해온 편집국 간부 4명을 자택 대기발령을 명하고, 이에 논설위원들은 사설 집필 거부로 맞섬.
- 6월 17일 사측은 <연합뉴스> 기사를 원용한 신문 발행을 시작함.
- 7월 16일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을 예정이었던 장 회장이 검찰에 출석 연기를 통보함.
- 사태가 좀처럼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한국일보 정상화를 촉구하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음.

### ◈ 민주노총, 7기 지도부 선출

- 민주노총 위원장-사무총장에 신승철-유기수 후보조 당선
  - 민주노총은 7월 18일 7기 임원선거를 실시하여, 결선투표 끝에 기호 3번 신승철-유기수 후보조를 제7기 위원장-사무총장으로 선출함.
  - 신승철 후보조는 1차 투표에서 참가자 711명 중 288표(40.5%), 결선투표에서 참가 대의원 702명(투표율 74.7%) 중 457표(지지율 65.1%)를 획득함.
  - 신승철 당선자는 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 소속으로 기아차노조 위원장과 민주 노총 부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음.
  - 민주노총은 2012년 11월 김영훈 위원장의 사퇴 이후 두 차례나 위원장 선거가 무 산되며 8개월간 지속된 지도부 공백을 해소함.
  - 민주노총은 이날 제59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공공부문 민영화 저지 투쟁특별결의문을 채택하고, 하반기 총력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함.

### ◈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창립

-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창립총회 개최
  -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7월 14일 삼성전자서비스 40개 센터 소속 386명의 조합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개최함. 노조에 따르면 14일 기준 가입조합원은 800여명임.
  - 조합원들 중 다수는 협력업체에 속하거나 인력업체를 통해 파견 근무하는 간접고용 노동자임.
  - 지회는 출범과 함께 삼성전자서비스에 최저임금법 위반 등 현안 해결을 위한 단 체교섭을 요구할 계획임.
  - 지회는 이날 "위장도급·불법파견·근로기준법 위반이 시정될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결의함. 위영일 지회장은 "지회 설립이 다른 간접고용 노동자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투쟁하겠다"고 선언함.
  - 금속노조는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설립을 '위장도급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열악해진 노동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인간선언'으로 규정하고, 지회의 투쟁을 끝까지 엄호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 위장도급·불법파견 감독 강화
  -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고용 근절 및 근로기준법 준수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7월 13일 "삼성전자서비스가 지회 창립총회 예정일인 14일 고액의 수당을 내걸고

노동자들의 출근을 유도한 사내 메일을 보냈다"며 삼성전자서비스 영서지점이 협력업체에 보낸 메일을 공개함.

- 한편 16일 노동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서비스는 협력업체 소속 AS기사들에게 PDA 기기를 직접 제공하고, 이를 통해 각종 업무지시를 전달함. 노동계는 PDA를 이용한 업무지시가 삼성전자서비스의 원청 사용자성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거라고 주장함.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은수미 민주당 의원은 7월 18일 '삼성전자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 매뉴얼'을 공개하고, 삼성전자서비스가 2000년대 초반부터 자체 통합전산망을 통해 AS기사들을 상대로 사실상 인사노무상 지휘권을 행사했다고 주장함.이에 대해 삼성전자서비스 관계자는 해당 시스템이 협력업체의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이었으며 각종 자료는 협력업체가 직접 관리한다고 해명함.
- 은수미 의원은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고용 문제가 대기업도 위장도급에서 자유 롭지 못함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주장하며, 위장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모든 수단 을 동원하겠다고 천명함.
- 고용노동부는 삼성전자서비스의 위장도급·불법파견·근로기준법 위반 의혹에 대해 철저한 현장감독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힘.
- 무노조 경영을 고수해 온 삼성전자의 향후 고용관계 변화 여부에 귀추가 주목됨.

## ◈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범위 확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개정안 7월 1일부터 시행
  -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개정안은 과거보다 복잡해진 산업구조와 작업환경의 변화속에서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유해요인과 질병을 고려하여 인정 범위를 대폭 늘린 것이 특징임.
  - 개정안은 산업구조와 작업환경 변화에 따른 유해요인 35종을 추가함. 직업성 암유발 유해요인 확대에 맞춰 직업성 암의 종류도 현행 9종에서 21종으로 늘어남.
  - '장기간 고농도의 석탄·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의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 폐쇄성폐질환',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신규 질병 또한 인정기준에 포함됨.
  - 개정안은 현행 인정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유해물질 및 질병이라도 개별적인 업무 관련성 평가를 거쳐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조항을 마련함.
  - 개정안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인정기준에 업무시간 개념을 도입하고, 업무 상질병 인정기준 분류방식을 개편하는 등 전반적으로 진일보된 제도로 평가됨.

(송민수, 동향분석팀 책임연구원)